

부산지방법원 2023. 6. 14 선고 2022가단341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5. 3.

판 결 선 고 2023. 6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밀양시 C 대 52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6, 7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5㎡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,

나.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1,254,000원 및 2023. 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2,5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가 원고 소유인 밀양시 C 대 52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6, 7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5㎡(이하 ‘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’이라 한다) 지상에 적어도 2012년 이전부터 시멘트블럭조 스텔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, 2012. 1. 1.부터 2022. 12. 31.까지의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의 총액은 1,254,000원이고 현재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월 차임은 12,560원인 사실은 갑제 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며, 원고가 구하는 2012. 1. 1.부터 2022. 12. 31.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 1,254,000원 및 2023. 1. 1.부터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,56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의 아버지 망 E가 1968. 3. 9.자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60㎡를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평온, 공연하게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,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.

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·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1997. 8. 21.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에 의하면, 피고의 아버지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하여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권원을 따로 취득한 바 없고,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의 면적(60㎡) 및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의 면적(25㎡)에 비추어 그 권원을 오인할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, 권원의

성질상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.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정민

별지

도면



